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1 선고 2019나6842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항소인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목민, 담당변호사 배은서

피고, 피항소인 한국주택금융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명, 담당변호사 성기창

변론 종결 2019. 5. 14.

판결 선고 2019. 7. 11.

제 1 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19. 선고 2018가단5101447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7. 7. 24.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주식회사 C에게 위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피고 A"를 "A"로 일괄하여 고치고, 제1심판결 제3쪽 마지막 행부터 제4쪽 제8행까지를 "한편 A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7. 7.경 피고에게 화성시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별지 목록 기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 한다)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하고, 같은 달 20. 이러한 사실을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인인 주식회사 C에게 통지하였다."로, 제4쪽 인정근거 중 "을가 제2호증, 을나 제1, 2호증"을 "을다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는 원고에게 합계 35,421,386원(= 대위변제금 34,304,034원+ 채권보전비용 등 1,117,352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원고 등 일반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사해의사도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가 A의 기본적인 주거의 확보를 통한 재기를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을다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A는 2014. 12. 18. G은행으로부터 84,000,000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피고로부터 받은 보증서(보증금액 75,600,000원)를 G은행에 제출하였고, 그 대출금을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로 하여 2014. 12. 19.경 주식회사 C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A가 G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6. 9. 2.경 수원지방법원에 2016회단10035호로 회생신청을 함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피고는 A를 대위하여 2017. 2. 13. G은행에 75,614,26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그 후 A는 2017. 5. 29. 위 대위변제금에 대한 채무의 감면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7. 6. 28.경 A에게 분할상환 초입금으로 7,560,000원을 지급받고, 96회에 걸쳐서 매회 717,700원씩을 상환하도록 채무감면을 해주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A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다.

라) A는 2017. 10.경까지는 분할상환금을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3) 판단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권양도를 A의 피고에 대한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라고 볼 수는 없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A의 이 사건 채권양도는 원고 등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 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차종료 후 임차건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 연체 차임 등 모든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잔액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어서, A는 차임 연체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해진 임대차기간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가 A의 기본적인 주거의 확보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어려운 점, A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에 대한 채무를 96회에 걸쳐 분할상환하면서 그 상환기간 동안 지연손해금을 면제받는 이익을 얻기는 하지만, 피고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A의 적극재산 중 회수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자신의 채권액보다 다액인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취득하는 이익을 얻게 되는 점, 피고가 A에게 채무에 대한 분할상환을 승인하기 위해 A로부터 담보를 제공받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피고는 A의 채무및 자산 상태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A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는 피고에게 회수가능성이 높은 채권을 확보하도록 할 목적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대하여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따라서 A의 채권자인 원고는 A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의 취소를 구할 수 있고, 피고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주식회사 C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유성, 판사 최은주, 판사 정 원

별지

목 록

제1심 공동피고 A가 제3채무자 주식회사 C으로부터 반환받을 화성시 E아파트, F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10,250,000원. 끝.

